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84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윤준병·김성회·황명선

허종식 • 박희승 • 박민규

박홍배 • 조계원 • 김윤덕

정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렵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출연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음. 그러나, 특례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동시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공제비율이 낮아 참여 확대의 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 공제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

고,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 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030년----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 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00분의 10(제2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 호<u>의 경우에는 100분의 50)</u>---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 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 니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